

의안
번호

78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2. 11. 22.

전문위원 김 동 성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경수현 의원 외 8명

나. 의안번호 : 제78호

다. 제출일자 : 2022. 11. 10.

라. 회부일자 : 2022. 11. 17.

2. 제안이유

-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드는 현대 사회에서 상대적 약자인 노인에게 대한 각종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노인에게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조례에서 사용되는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다. 다른 조례와의 우선적 적용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5조)
- 라. 기본계획, 실태조사,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6~8조)
- 마. 협력체계 구축, 홍보를 규정함(안 제9~10조)
- 바. 비밀누설의 금지를 규정함(안 제11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 「노인복지법」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행복도시 성북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 나. 예산 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2. 11. 10. ~ 2022. 11. 16.
 - 의 견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개요

- 본 제정안은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드는 시점에 노인학대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노인을 지원하여 성북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제출된 제정안으로 1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보건복지부 ‘2021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학대 사례의 경우도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며, 2020년 6,259건에서 2021년 6,774건으로 약 8.2% 증가하였음.

<전국 연도별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 및 증감률>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일반사례	8,687	10,294	10,828	10,714	12,617
학대사례	4,622	5,188	5,243	6,259	6,774

※ (출처: 보건복지부,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참조)

- 1) 일반사례: 신고접수된 사례 중 단순 정보제공이나 기관 안내 등의 문의로 학대의심 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와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었으나 사실관계 확인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 및 학대위험요인이 드러나지 않은 사례
 - 2) 학대사례: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사례판정 결과 학대사례(응급, 비응급, 잠재적 사례)로 판정된 사례
- 전국적으로 학대사례 신고 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1,431건, 서울특별시 736건, 경상북도 599건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북구의 경우 20건(0.3%)으로 집계되었음.

<2021년 서울시 노인학대 사례 건수 및 비율>

행정구역	건수	비율(%)	행정구역	건수	비율(%)
서울시 전체	736	10.8			
종로구	14	0.2	서대문구	25	0.4
중구	8	0.1	마포구	36	0.5
용산구	27	0.4	양천구	25	0.4
성동구	17	0.3	강서구	62	0.9
관악구	52	0.8	구로구	45	0.7
광진구	17	0.3	금천구	22	0.3
동대문구	35	0.5	영등포구	29	0.4
중랑구	31	0.5	동작구	32	0.5
성북구	20	0.3	서초구	10	0.1
강북구	36	0.5	강남구	18	0.3
도봉구	31	0.5	송파구	38	0.6
노원구	48	0.7	강동구	21	0.3
은평구	36	0.5			

※ (출처: 보건복지부,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참조)

□ 주요내용

- 안 제1조는 목적을, 안 제2조는 정의를 규정하여 조례의 제정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고,
- 안 제4조부터 제5조에서는 노인보호에 관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부터 제9조에서는 노인보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른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효율적인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홍보 및 비밀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종합의견

- 본 제정안은 노인의 인권 및 권익 보호와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인구의 증가 및 노인학대 증가 추이에 비추어볼 때,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본 제정안과 관련하여 주관부서 의견조회 시 다음과 같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음.

제정안에 대한 주관부서 의견제시

-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 노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무로 판단할 수 있고,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사항은 기존에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어르신 행복도시 성북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증진 기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중복될 수 있음
- 따라서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무로써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 노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어르신행복도시 성북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증진 기본 조례」에 추가, 보완하여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와 22개의 자치구에서 제정하였으며, 전국적으로는 11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 11. 10. 기준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 제정 현황

(2022. 11. 10 현재)

■ 서울시 : 총 23개 자치단체

자 치 단 체 명	비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북구, 관악구, 노원구, 동대문구, 성동구, 송파구, 양천구, 중구, 서초구, 구로구, 영등포구, 강동구, 도봉구, 마포구, 서대문구, 중랑구, 은평구, 광진구, 강서구, 금천구,	용산구, 종로구, 성북구 (미제정 : 3개구)

관 계 법 령

□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1.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
2.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3. 노인학대 예방의 홍보, 교육자료의 제작 및 보급
4. 노인보호전문사업 관련 실적 취합, 관리 및 대외자료 제공
5.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리 및 업무지원
6.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심화교육

7.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8. 노인학대 분쟁사례 조정을 위한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9.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둔다. <개정 2015. 12. 29., 2020. 12. 29.>

1.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2.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3.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3의2. 피해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의 요청

4.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5.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6.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7.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8. 노인학대사례 판정을 위한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9.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노인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제3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7. 4. 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5. 12. 29., 2016. 12. 2., 2017. 10. 24., 2018. 3. 13., 2018. 12. 11., 2021. 12. 21.>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

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5.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16.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지무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0. 22., 2018. 3. 13.>
-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1.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 내용·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0. 22., 2018. 3. 13.>

제3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①제3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를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② 제1항에 따라 출동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8.>

③ 제2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설 2015. 1. 28.>

④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신고자·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⑥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 6. 7., 2015. 1. 28.>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의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해노인, 그 보호자 또는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⑧ 제7항의 신분조회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행복도시 성북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제13조(노인학대 예방) 구청장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

행 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및 사후관리
3.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4.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12.31.)